

『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조례를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와 고지·고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도로명주소를 통리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23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「도로명주소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 제정 시행으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함에 앞서 도로명 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서의 효력발생을 위한 도로명 주소 고지·고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- 방문고지 업무를 「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위촉·임명된 통리장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며
- 전국적으로 일제 동시에 추진되는 도로명 주소 고지·고시와 관련 방문고지를 담당하게 되는 통리장에게 실비를 보상하여 방문고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
- 본 사업은 주소체계를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금회 1회로 종료되는 사업이며, 통리장의 고유 업무외의 업무로 판단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업무의 원활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거나 실비변상 지급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.